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년 1차 지역분과 회의자료(1월)

구 분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협의체 사회적 비전 & 미션	비전 :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미션 :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지역분과 목표	참여와 협치로 지역복지공동체를 실천하는 지역분과

- 일 시 : 2017. 1. 23.(월) 15:00 ~18:00
- 장 소 : 광고종합사회복지관
- 주요내용
  - 1. 인사 및 공유
    - 1) 새해 인사 및 기관별 행사·정책 변동사항
    - 2)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 3) 전차회의결과
  - 2. 안건토의
    - 1)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 2) 지역분과 2016년도 활동 평가
    - 3) 지역분과 2017년도 활동 계획 확정
  - 3. 차기회의 일정

# 1. 인사 및 공유

## 1) 새해 인사 및 기관별 행사·정책 변동사항 공유

- 협의체 : 실무협의체회의 2/17(금) 14:00 시청 중회의실,  
대표협의체회의 2/28(화) 14:00, 시의회 세미나실

## 2)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 ①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이란 ?

- (정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이 적용대상에 해당
  - \* (적용범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평가등 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므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적용대상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소관 '공무수행(직무관련성)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한하여 적용

#### < 직무관련성 해석 내용 >

- \*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

- (적용범위) 공무수행과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법제5조부터 제9조)
- ①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개 >

1. 불법 인허가 · 면허 등 처리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3. 채용 ·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 탈락되도록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 포상 등의 선정 · 탈락에 개입
6.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11.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15.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이 지위·권한 남용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 >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대응요령)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용하지 아니하면(청탁에 따라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함

※ 다른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없음

- 단계적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청탁 거절의 사표시 등 현명하게 대처 필요

※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 필요

√ 청탁 거절로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 간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없이 거절하여 심리적 갈등 최소화

- (신고·처리 방법) 협의체 위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병행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조치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음.
- \*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②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약속 금지

- 다만, 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공무수행사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을 제재조치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금품 등을 반환·인도·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3) 전차 회의결과 : <붙임 1>**

## 2. 안건토의

### 1)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 ○ 관련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 추진과제

〈단위 : 개/천원〉

구 분	총 계	지 역 사 업	보 편 사 업	비 고
사업건수	74	53	21	· 지역사업 : 도·시비사업 · 보편사업 : 국비사업
사업예산	65,039,402	33,170,090	31,869,312	

※ 72개 사업 63,121백만원에서 → 74개 사업 65,039백만원으로 1,917백만원 증액(사유: 국·도비 내시 변경 등)

- 평가주체 :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평가기간 : 2017. 1 ~ 2월
- 평가절차

내 용	역 할	일 정
평가 기획	사회복지과 협의체 사무국	2017. 1. 2.(월) ~ 4.(수)
사업 추진결과 작성, 제출	사업 소관부서	2017. 1. 5.(목) ~ 13.(금)
세부사업 평가	협의체 12개 실무분과	2017. 1. 16.(월) ~ 25.(수)
평가 내용 정리·발송	협의체 사무국	2017. 1. 31(화) ※설 연휴 1. 27.(금)-30.(월)
사업부서 의견 피드백	사업 소관부서	2017. 2. 1.(수) ~ 6.(월)
평가 TFT 확인, 평가	평가 TFT	2017. 2. 7.(화) ~ 10.(금)
실무협의체 검토	실무협의체	2017. 2. 17.(금) 예정
대표협의체 심의, 도 제출	대표협의체 사회복지과	2017. 2. 27 또는 28

## 2) 2016년 지역분과 활동 평가

### - 추진사업

분과명	사업명	추진실적
지역분과	수원시 지역복지 예산 분석 및 종사자 인권 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권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6.6.10(금) 14:00~16:00</li> <li>• 장 소 : 시청 중회의실</li> <li>• 참 석 : 사회복지 종사자 등 157명</li> <li>•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제안</li> <li>- 수원시 종사자 처우개선 성과</li> </ul> </li> </ul> </li> <li>○ 2016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서 검토, 총괄 분석, 동종단체 비교</li> <li>• 정책 현안내용 및 제안사항 등</li> </ul> </li> </ul>

### - 출석율 : 실무분과 전체 평균 61.6%(민 65.3%, 관 41.5%)

지역									
월	출석률			참석			정원		
	합	민	관	합	민	관	합	민	관
1월	76.5%	78.6%	66.7%	13	11	2	17	14	3
2월	75.0%	84.6%	33.3%	12	11	1	16	13	3
3월	81.3%	76.9%	100.0%	13	10	3	16	13	3
4월	75.0%	84.6%	33.3%	12	11	1	16	13	3
5월	#####	#DIV/0!	#DIV/0!	0			0		
워크숍	43.8%	38.5%	66.7%	7	5	2	16	13	3
6월	87.5%	92.3%	66.7%	14	12	2	16	13	3
7월	61.1%	73.3%	0.0%	11	11	0	18	15	3
8월	61.1%	73.3%	0.0%	11	11	0	18	15	3
9월	61.1%	73.3%	0.0%	11	11	0	18	15	3
10월	61.1%	60.0%	66.7%	11	9	2	18	15	3
11월	61.1%	73.3%	0.0%	11	11	0	18	15	3
12월	#####	#DIV/0!	#DIV/0!	0			0		
결과보고대회	55.6%	60.0%	33.3%	10	9	1	18	15	3
계	66.3%	72.2%	38.9%	136	122	14	205	169	36

### 3) 2017년 지역분과 활동 계획

#### --- 2017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기준(안) -----

##### ○ 목 적

- 민관협력과 사회복지시설(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안 과제 발굴을 통한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 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을 상위 기구인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함으로써 실무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 2017년 방향

- 실무분과 사업의 책임성, 자발성 및 객관성 강화를 통한 민·관 협력의 선도적 모델 개발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시 보장협의체의 참여와 지원을 위한 분과별 지원모델 개발 및 발굴 추진

##### ○ 사업내용

- 동 복지허브화 안착을 위한 시책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 지역의 현안 욕구 및 문제를 발굴·연구하여 정책 과제로 제안하는 사업
- 단일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적 욕구 및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기관 연합 사업
- 분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중 다른 사업에 비해 민·관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 ○ 수행절차



##### ○ 추진일정

- 실무분과별 운영 방향 및 사업 논의 : 2016. 12 ~ 2017. 1월
-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 취합 : 2017. 1월 말
- 공동사업 선정 회의(실무협의체 회의) : 2017. 2월 중
- 사업 추진 : 2017. 3월 ~ 11월
- 결과보고서 제출 : 2017. 12월 초까지

○ 선정지표

구분	총	지역현안사업	파급효과 (주민복지기여도)	실현 가능성	연계협력 활성화	시책사업 준수
배점	100	20	20	20	20	20

○ 선정기준(안)

구분	배점기준		비고
배점 기준	100점 만점		
선정기준점	70점 이상		
총 점	100		
배점 기준	지역현안사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내용이 지역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사업 여부(1점~8점)</li> <li>○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사회복지 유관기관의 참여도(1점~6점)</li> <li>○ 사업계획 내용이 주민 욕구 등 객관성 있는 지표와 함께 제시되는 등 계획의 구체성 정도(1점~6점)</li> </ul>
	파급효과 (주민복지기여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의 적절성, 파급성 및 지역주민복지 증진에 어느 정도 유익한지 ? (1~10점)</li> <li>○ 지역주민의 수혜 및 사회적 편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1~10점)</li> </ul>
	실현 가능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성과 실현가능한 척도(목표)의 적절성 여부(1~5점)</li> <li>○ 참여하는 위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1~5점)</li> <li>○ 사업규모 내용 재원확보(공공·민간)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1~5점)</li> <li>○ 향후 우수모델 발전 가능성(1~5점)</li> </ul>
	연계협력 활성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 정도(1점~8점)</li> <li>○ 참여하는 분과위원의 업무 다양성(1점~6점)</li> <li>○ 타 사회복지 유관 기관 연계 협력 여부(1점~6점) → 분과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li> </ul>
	시책사업 준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정책 및 수원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정도(1점~8점)</li> <li>○ 공적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 여부(1점~6점)</li> <li>○ 공공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1점~6점)</li> </ul>

※ 70점 이상 : 사업추진 / 70점 ~ 50점 : 선 보완 후 추진 / 50점 미만 : 재검토



※ 11월 논의내용

- 사회복지 보수교육 만족도 평가
- 인권 후속작업
- 예산분석 (상반기)

- 월별 활동 계획

: 정기회의 일정

월	지역분과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모니터링	협의체 전체 행사	일정, 장소
1	*계획 확정, 제출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		
2	*분과 사업 공모, 심의			
3			전체 워크숍	
4				
5				
6				
7		2017년도 시행계획 중간평가		
8				
9				
10	*분과사업 종료, 결과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 검토	7기 협의체 구 성	
11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 심의	활동결과보고대 회(11월말)	
12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기초 작업 추진 예정

※ 협의체 전체 행사 : 대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실무분과명)**

**사업명 \_ 000**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2. 사업목적**

- 
- 

**3. 사업목표**

-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대 상 :
- 주요내용 (개요)

**5. 세부계획 (단위사업별 세부 계획)**

1) 세부사업 1 :

- 시행시기 :
- 참여인원 :
- 세부내용(활동) :
  - 
  -

- 추진방법 :
-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

2) 세부사업 2

## 6. 기대효과

- 
- 

## 7. 평가방법

목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 8. 소요예산

(단위 : 원)

내용	금액	산출근거	비고(재원출처 등)
계			

## 9. 분과위원 명단

연번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2) 전차회의결과 공유 : 이의없음

2. 안건토의

1)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계획 모니터링

사업번호	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의견
6-1	수원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상담센터 운영	인권팀	정수진	- (4) 사업개요 참여기관 : 자자체-감사관 인권팀 - 성과목표 추가 - 3기 계획상 성과지표 : 실태조사 여부, 상담이용자 수 → 3기 계획 대비 변경된 경우 사유 명시 (현재 실태조사가 빠져있음)
6-2	인권강화 교육	인권 교육 강화	인권팀	김규리	- (5)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당초 '인권 교육 참여수' 이나 '추진횟수' 로 변경됨. 사유 문의 - 목표수준 산출근거 : 목표수준에 해당하는 근거 명시 (교육추진 105회인 근거) - (6) 사업량 : 사업내용(대상)에 따른 세부 교육횟수, 명으로 산출 (예-공직자 00회, 00명. 수원시민 00회 00명 등)
8-7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사업	문화정책팀	이진영	- 의견 없음
10-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지원	복지자원관 리팀	김충영	- (5) 협력기관, 성과목표 추가 - (6) 세부사업 : 지원되는 내용 명시 (예-보수교육 00명, 상해보험비지원 00명, 건강검진 00명 등) - (보고수교육 수행기관 건의) 전문직 보수교육으로 서 자리 매김이 필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질 평가 필요

※2017년도 지역분과사업

-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수교육 조사연구

2) 지역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분석 내용 검토

- 예산분석 통일성있는 보완 필요
- 정책제안 내용의 한계 : 예산분석 내용과 정책제안 내용의 연계성 부족 (정책 이슈 중심으로 제안)
- 예산분석 보고서 발간 할것인가? : 발간이 부담스러운 부분 존재. 슈퍼비전(자문) 필요, 자문후 발간
- 내년 예산분석 교육을 통해 방향성 정립 필요
- 내년 예산 분석시 교육과 충분히 논의 자리 필요
- 예산분석은 당해연도 시기성도 중요하므로 상반기중 진행

### 3.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2017. 1. 25.(수) 10:00

○ 장소 : 광고종합사회복지관

○ 내용 : 2017년도 활동 계획

- 사회복지 보수교육 만족도 평가

- 인권 후속작업

- 예산분석 (상반기)

- 연간 일정 논의 (연간 일정 및 장소 확정)